

— 구미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1. 제 안 자 : 구미시장

2. 제안이유

-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변동된 사항들을 법령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종합토지세를 국세와 지방세로 이원화하고 토지에 대한 과세대상을 재산세에 포함 과세하는 등 재산세를 전면 개편함에 따라 종합토지세 규정은 삭제함.

- 재산세 납기

- 주 택 : 산출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 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 까지
- 건축물 :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 까지
- 토 지 :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 까지

나. 자동차세중 시시당 140원의 세액이 적용되는 배기량 기준을 1500시시에
서 1600시시로 조정함.

다. 토지에 대한 도시계획세의 납기를 매년 9.16 ~ 9.30로 변경하고, 과표
변경으로 인한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막기 위하여 세율을 현행 1,000
분의 2에서 1,000분의 1.5로 인하함.

라. 농업소득세를 5년간 과세 중단함.

마. 기타 법령개정에 의한 조문상의 용어 등을 보완 정비함.

4. 참고사항

- 지방세법 제5조·제111조, 동법 제2절 재산세(제180조·제181조·제183조, 제187조 내지 제191조)·제196조의 5·제196조의 17·제237조, 동법시행령 제173조의 2
- 법률 제7332호 지방세법 부칙 제1조·제5조
- 경상북도 재정과-897(2005. 1.27) 시세조례 정비안(행정자치부)

5. 검토의견

- 종합토지세를 국세와 지방세로 이원화하고 토지에 대한 과세대상을 재산세에 포함 과세하는 등 재산세를 전면 개편, 재산세 납기,자동차세중 시시당 적용되는 배기량 기준을 조정, 토지에 대한 도시계획세의 납기 및 세율 인하 등 상위법 개정에 따른 개정조례안임.
- 따라서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과 변동사항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써 상위법령이나 타 조례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음.